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정 부 업 무 평 가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의 개편에 따라 동 평가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서 제외하며,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 정부업무평가 업무의 운영·조사·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명확화(제2조제2호 개정)

-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포함

나.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른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(제4조 제10호의2 및 제8조제2호 삭제)

-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(2026.5.6.) 내용을 반영

다. 포상금 지급한도 명시(제21조 신설)

-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관당 최대 5억원으로 명시

라. 지정위탁 근거조항 마련(제22조제3항, 제4항 및 제6항 신설)

○ 국무조정실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국무총리 소속기관·보좌기관 : 공정거래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금융위원회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,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

제4조제10호의2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21조)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를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연구기관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

④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1.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·분석·연구 및 정비 지원
2.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 운영 지원
3. 특정평가 운영 지원
4. 외국정부의 평가 관련 조사·분석·연구
5. 그밖에 정부업무평가의 운영 및 위원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⑥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.

제21조(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)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.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5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범위)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·보좌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범위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국무총리 소속기관 : 국무조정실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</u>	2. <u>국무총리 소속기관·보좌기관 : 공정거래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금융위원회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,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</u>
제4조(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)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)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0의2. 「국가재정법」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<u>통합 재정사업성과평가</u>	<u><삭 제></u>
11. (생략)	11. (현행과 같음)
제8조(평가총괄관련기관) 법 제11	제8조(평가총괄관련기관) -----

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재정사업부문 : 기획예산처

3. · 4. (생략)

<신설>

제21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)

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.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5억원으로 한다.

제22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를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연구기관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

<신 설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

④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1. 정부업무평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·분석·연구 및 정비 지원

2.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도 운영 지원

3. 특정평가 운영 지원

4. 외국정부의 평가 관련 조사·분석·연구

5. 그밖에 정부업무평가의 운영 및 위원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⑥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0 - 2469